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연번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1	2641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642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2643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2644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2645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6	264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647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648	장성군 관리계획(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채택
9	2649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2650	장성군 추모공원(공설납골당)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1	2651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2	2652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3	265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4	2654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2655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6	2656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채택
17	2657	장성역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채택
18	2658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9	2659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	266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1	2661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8. 29.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장성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관리 및 계승하고,
 - 향토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지정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1조)
 - 보존관리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8. 29.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심민섭 의장)
-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시설 설치, 관계인에 대한 권고(안 제5조~안 제6조)

○ 화재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안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8. 29.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차상현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협의체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치매관리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5조)

○ 제2장 치매관리·지원

- 시행계획의 수립 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 제3장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

○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5조)

○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7조제2항)

○ 기금 심의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 심의대행 삭제(안 제7조제3항)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0조)

○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예치현황 신설(안 제7조제3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관리 의무 신설(안 제7조제4항)

○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후보자 5명을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장성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장성군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 역할 수행

○ 위촉 대상자 : 5명

연번	성명	자격	주요경력
1	유용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1985~2018) 구례군청 서기관 퇴직
2	김형수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018~2019) 장성여중 교감 (2019~2021) 장성중 교감 (2022~2023) 진도석교중 교장
3	양월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2012~2015) 경성대학교 교수 (2004~2009)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4	이동식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1981~1998) 현대자동차 팀장 차량기술사 자격 소지 (2002~2004) 전북대 기계공학 박사수료 (2015~2018) 전주비전대 겸임교수
5	김순진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1982~2020) 경상북도 서기관 퇴직 (2020~현재) 조이행정사무소 행정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

■ 제안이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26. 3. 예정)에 따른 시범 지자체 선정과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정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응 인력을 확보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 685명 → 715명 (증 30명)

○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단위 : 명)

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행	685	345	17	106	43	174
개정	715	371	17	105	46	176
증감	+30	+26	-	△1	+3	+2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관광과)

▪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9조)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감독 등(안 제10조 ~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 군관리계획(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문화교육과)

▪ 제안이유

-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관람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 사업추진 중인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황룡면 필암리 538-3번지 일원(6,342㎡)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해제) →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변경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서 주차장 조성 불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기 설정된 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필암서원 국가유산 지정 구역과 중복된 구역(5,966㎡)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 명확화)

■ 의결결과 : 원안채택

9.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
- 제안이유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 (현행) 보험료 부과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
 - (개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추모공원(공설납골당) 민간위탁 동의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제안이유

-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른 장례 문화에 적극 대응 및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 역량있는 민간 전문법인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운영 목적
 - 장사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민간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장례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5. 10. 1. ~ 2030. 9. 30.(5년)
 - 위탁사업 :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대상 : 장성군 추모공원(삼계면 영장로 90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돌봄통합 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보호자 부재로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신규사업인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운영 목적

-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인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5. 9. ~ 12.
- 사업대상 : 보호자 부재로 돌봄 필요 노인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외자 우선지원)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병원 이동 지원
 - 자택부터 병원 출발 및 귀가(진료동행, 병원 접수 및 수납지원)
 - 의사의 진료결과 및 약처방, 복용법 등 보호자 전달
- 서비스 제공지역 : 장성군 관내
- 이용시간 : 1일 4시간(월~금, 09시~18시)
- 이용금액 : 4,000원(수급자·차상위 무료)
- 예약기간 : 이용일 7일 전
- 소요예산 : 50,000천원(고향사랑기금)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환경과)
- 제안이유

-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사유 : 2025년도 운용계획 변경(복리증진사업 집행)

※ 월평5리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수입 및 지출액		증감
		경정	기정	
수 입	계	1,988,422	1,988,422	-
	이자수입(a)	52,871	52,871	-
	예치금회수(b)	1,805,551	1,805,551	-
	전입금(c)	130,000	130,000	-
지 출	계	1,988,422	1,988,422	-
	일반보전금(d)	206,540	142,000	64,540
	예치금(e)	1,781,882	1,846,422	△64,54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1건(토지)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	재산가액 (천원)	비고
계	1개 사업		33,714.9	920,416	
토지	나노일반산업단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	남면 삼태리 879	33,714.9	920,416	

○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적 (㎡)	재산가액 (천원)	비고
계		1필지	33,714.9	920,416	
취득	토지	1필지	33,714.9	920,416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시행 2025.3.21.)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2015.11.19. 제2조제5항 → 제3조제3항으로 변경)
- 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2조)
 -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 수립·평가 등
-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3조제2항, 4항)
 - 위원장 군수→부군수,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당연직 3명→1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 제안이유
 - 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지정방식 개선 및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효율성 제고하고,
 -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객관성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안 제5조제3항)
 - 위원장·부위원장 지정 방식 및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5조제4항)
 -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 정비(안 제5조제4항)
- 의결결과 : 수정가결

16.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 제안이유
 -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사무공간 및 보건사업 공간 부족, 주차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10-3번지 일원(장성역 주변)
- 면적 : 11,422㎡

○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교통시설(철도) - 철도1 변경 신설(A=606,065㎡→602,876㎡) 감)3,189㎡(0.5%)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A 신설(A=11,422㎡)

■ 의결결과 : 원안채택

17. 장성역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
- 제안이유

-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장성역 주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밀도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에 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22번지 일원
- 면적 : 15,429㎡

○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목적 : 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 • 위치 : 장성읍 영천리 1273-22번지 일원 • 면적 : 15,429m²
성장관리계획 결정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진입도로 및 도로개설 주체 등 도로확보 기준(의무) - 주차장 확보 기준(권장)

▪ 의결결과 : 원안채택

18.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농산유통과)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우선적으로 촉진한다’는 표현은 특정 공급자에 대한 우대 해석의 여지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이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촉진한다’로 개정하여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안 제8조)
 - (현행)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개정)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공정한 방식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의결결과 : 수정가결

19.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교통에너지과)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수첩’이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정됨에 따라,
 - 조례상 용어를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별표 문구 변경(별표 1 비고란)
 - (현행)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 유공자 중 보철용차량 표지판부착 차량)의 자가운전차량
 - (개정)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국가 유공자 중 보철용차량 표지판 부착 차량)의 자가운전차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5. 9. 1.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 계상과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 모 : 648,980백만원
 - 회 계 별
 - 일반회계 : 638,058백만원
 - 특별회계 : 10,922백만원

○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648,980	623,549	25,431
일반회계	638,058	615,525	22,533
특별회계	10,922	8,024	2,898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1.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 발의일자 : 2025. 9. 5.
- 발 의 자 : 심민섭 의장
-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인근 4개 시·군에 걸쳐 총 267km²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 주요내용

-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하라.
- 정부는 지역 발전에 대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즉시 이양하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